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January, 2026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상사조정조례」 개요

■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무원]
02. 상사조정조례 [국무원]
03. 해관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 위생검역 관리 규정 [해관총서]
04. 해관 등록·신고 기업 신용관리 규정 [해관총서]
05.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분 사건 위법수익 산정 규정 [시장감독관리총국]

■ 법률 뉴스 ■

「상사조정조례」 개요

2025년 12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상사조정조례」(이하 “조례”)를 정식 공포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사조정을 규율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한 전담 입법으로, 상사조정이 중국의 다원적 분쟁해결체계에서 독립적인 제도로 정식 자리매김하였음을 뜻한다.

대중국 투자나 국경간 거래 혹은 중국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중국 내 상사조정 제도의 확실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국이 국제 분쟁해결 규범과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정책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1) 상사조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의 마련

금번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중국의 법체계상 상사조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국가적 차원의 입법이 부재하였다. 실무적으로 상사조정은 주로 업종별 단체(협회), 중재기관 또는 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범 운영에 의존해왔으며, 이로 인해 법적 지위, 절차 규칙 및 조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지역이나 사건별로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특히 상사조정은 기존에 운영되던 인민조정((人民调解)제도와는 달리, 그 이념과 기능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상사조정은 기업, 투자자, 주주 등 대등한 당사자 간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국제 무역, 국경간(크로스보더) 투자, 건설공사, 금융 거래,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 상업적 민감성 및 타 관할권과의 연계성 요소를 수반하므로, 조정 절차의 전문화, 비밀 유지 및 당사자 사적 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다.

본 조례는 상사조정기구의 설립 요건, 조정인의 전문적 자격요건, 조정 절차의 기본 원칙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상사조정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사조정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국제 상사조정제도와의 연계 강화

최근 국제 상사조정은 국경간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그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송이나 중재와 비교하더라도, 상사조정은 절차적 유연성, 비용 절감, 비즈니스 관계 유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일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 상사조정은 국경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중국이 국제 상사조정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제도적 의지를 반영한다. 국내 상사조정 규칙을 통일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조정 결과의 국제적 이해도와 수용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타 사법관할권과의 조정합의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중국의 상사조정제도는 전문화, 규범화 및 당사자 자치의 존중이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 상사조정의 주류적인 실무 경향과도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

(3) 상업 분쟁 해결을 위한 효율적 경로 제공

이번 조례의 입법 배경에는 중국 내 상업 분쟁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민·상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과 중재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사건 처리 지연과 심리 기간 장기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사조정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이 법에 의거하여 상사조정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는 분쟁해결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상업 분쟁이 소송이나 중재에 회부되기 전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대립이 적고 상업적 유연성이 높은 선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는 분쟁해결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그리고 장기적인 상업적인 협력관계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종합적으로, 「상사조정조례」의 제정은 중국 상사분쟁 해결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이는 상사조정 분야의 입법 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협의 내지 협상에 기초한 국제화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지원한다는 중국의 명확한 신호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상사조정은 향후 중국 관련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은 거래 구조 설계,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 검토 및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시 중국법상 상사조정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무원] 
02. 상사조정조례 [국무원] 
03. 해관 출입국 특수 화물·물품 위생검역 관리 규정 [해관총서] 
04. 해관 등록·신고 기업 신용관리 규정 [해관총서] 
05.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분 사건 위법수익 산정 규정 [시장감독관리총국] 

법무법인[유] 지평